

(「異議없습니다。」하는 委員 있음)
異議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(議事棒 3打)

(參照)

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개정사유

○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리와 이에 따른 전문위원 정원을 3명 증원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위원회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정리 : 7개위 → 10개위(안제7조)
○ 전문위원 정원을 3명 증원(7명 → 10명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운영위원회, 내부위원회, 재무경제위원회, 생활환경위원회, 사회복지위원회, 수자원관리위원회, 문화교육위원회, 건설위원회, 도시정비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자료조사 및 의안정리

<별표>의 일반직 4급 정원란 중 “10”을 “13”으로, 정원내용란중 “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상당 7”을 “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직 4급상당 10”으로 하고, 일반직 소계 정원란 “54”를 “57”로, 총계란 정원 “110”을 “11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7조(의안담당관) 의안담당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. (생략) 2. <u>의회운영위원회, 내부위원회, 재무경제위원회, 환경위원회, 교육사회위원회, 도시계획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자료조사 및 의안정리</u> 3. ~ 4. (생략)	제7조(의안담당관)...(현행과 같음)....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운영위원회, 내부위원회, 재무경제위원회, 생활환경위원회, 사회복지위원회, 수자원관리위원회, 문화교육위원회, 건설위원회, 도시정비위원회 및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자료조사 및 의안정리</u> 3. ~ 4. (현행과 같음)

3.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등에관한條例案動議의件

(10時 52分)

○委員長 金寅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등에관한條例案 動議의件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그러면 發議者를 代表해서 趙文晉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趙文晉委員 안녕하십니까? 民自黨 趙文晉委員입니다.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등에관한條例案 動議에 관한 件입니다.